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 
심사 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2-----사하구청장  
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  
 다. 상정일자 : 제120회 사하구의회 (제1차 정례회)  
 제 3차 총무위원회(2004. 7. 13),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윤여철 기획감사실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주민투표법(법률 제7124호, 2004. 1. 29 공포)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
  - 20세이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(안 제3조)
  - 주민투표의 대상 (안 제4조)
  - 투표청구 주민수 ▷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/13 (안 제5조)
  - 서명요청방식 ▷ 청구인대표자 증명 및 서명요청권 위임 등 (안 제6조)
  - 서명요청기간 ▷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항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(안 제7조)
  - 서명보정기간 ▷ 10일 이내 (안 제11조)
  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· 운영 ▷ 7인이상 (안 제12조)
  -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(안 제14조)

## 2)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

- 청구인서명부의 열람, 주민투표청구서 등 각종 서식 (안 제15조)
- 투표실시구역, 공표방법 등 (안 제16조)

## 3. 관계법령

- 주민투표법 (법률 제7124호)

## 4. 전문위원 겸토의견

- 본 조례제정안은 주민투표법 내용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받아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일부 문구 및 수치를 조정하므로 조례가 쉽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표준안대로 명시하였는데 법 제8조 제1항에 “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”가 명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”라고 추가 하는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되며
- 제5조는 투표를 청구 할수 있는 주민의 수자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기준에 의거 인구 25만~30만 미만의 단체에 해당하는 수치인 총수의 13분의 1이상에 해당한 것이며, 이 수치는 청구주민의 최소한의 수치를 의미하므로 조항 말미의 “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”를 “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”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
-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관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9항에서 위임 된 사항이며 심의대상 심의회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심의대상은 문제가 없으나

제2항이하 심의회 구성등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38개(기획감사실자료)나 되는데 각위원회의 개최회수역시 년간 1~2회에 불과 한 점을 볼 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기존 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한 점임을 감안 주민투표에 회부될 사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위원회중 본 조례안의 내용과 그 기능 및 구성인원이 비슷한 규제개혁위원회(조례 및 비교표참조)가 대행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.

## 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## 6. 토 론 요 지 : 없음

## 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붙 임: 수정안 대비표

**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**  
**수정안 대비표**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주민청구 주민수) 법 제9조 제2항의 ----- ----- ----- 총수의 <u>13분의 1로</u> 한다	제5조(주민청구 주민수) 법 제9조 제2항의 ----- ----- ----- 총수의 <u>13분의 1이상으로</u> 한다